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39

발의연월일: 2025. 4. 18.

발 의 자:임호선·김재원·임미애

위성락 • 박지원 • 김동아

김승원 • 이병진 • 전진숙

문대림 · 정준호 · 오세희

이워택 • 이춘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근로기준법」, 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·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.

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·육아와 농어 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·육아로 인 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.

특히,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·영어를 일시 중 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 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4(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·난임치료·유산·사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요건,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의4(여성농어업인 출산 및
	육아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
	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
	업인이 출산・난임치료・유산
	·사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
	중단하게 된 경우나 만 8세 이
	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	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
	<u>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영농·</u>
	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
	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
	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
	요건,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 및
	지원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
	<u>한다.</u>